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  
 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수신처참조

참 조 보험(원무)부서장

제 목 영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 고시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-46호(2014.3.27.)

2.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·3항,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,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영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영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36호, 2014.2.26.)」 이 불임과 같이 개정·고시 되어 안내합니다.

○ 주요 개정 내용

가. 신설 1항목

[219] Olmesartan+Rosuvastatin calcium 경구제(품명: 올로스타정)

나. 변경 1항목

[222] Salmeterol xinafoate + Fluticasone propionate 흡입제

(품명: 세레타이드 디스커스, 세레타이드 에보할러)

※ 시행일 : 2014년 4월 1일

붙 임 : 1. 고시문

2. 변경대비표

3. 별지1, 2(신설/변경)

※ 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([www.kha.or.kr](http://www.kha.or.kr)/협회업무/보험국 공지사항)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수신처

전국 병원장

사원 이지숙 차장 정윤학 국장 류항수

시행 : 보험 제 2014-147 ( 2014.03.31 )

우 121-737 서울 마포구 마포동 현대빌딩13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[www.kha.or.kr](http://www.kha.or.kr)

전화 02-705-9256 전송 02-705-9259 ( 대표FAX : 02-705-9209 ) E-mail : [jisooklee@kha.or.kr](mailto:jisooklee@kha.or.kr)